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33473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2. 9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이민호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2.9.30.가압류			배당요구종기	2025. 7. 15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한송이	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임차권 자	2020.4.29.	187,000,000		2020.5.1.	2020.3.6(180 ,000,000원), 2022.4.8(187 ,000,000원)		
<p><비고> 한송이:2024.5.23.주택임차권등기,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임차인 한송이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우선변제권 승계</p> 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주택임차권등기(단, 임차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임대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 한함)</p> <p>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</p>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 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33473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85-14

제이팰리스

103동

[도로명주소]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수도로 340

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5층 공동주택(다세대주택)

1층 18.86㎡

2층 157.19㎡

3층 157.19㎡

4층 157.19㎡

5층 157.22㎡

옥탑1층 18.86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2층 201호

철근콘크리트구조

45.51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85-14

대 652.2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652.2분의 27.0277

감정평가액

206,000,000

회차

기 일

최저매각가격

매수신청보증금

1회

2026.02.24

49,461,000

4,946,100

2회

2026.03.17

34,623,000

3,462,300

3회

2026.04.21

24,236,000

2,423,600

4회

2026.06.02

16,965,000

1,696,500